

「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4. 11(월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범위에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되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처분사항은 개별법령에 적용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